

더 나은 삶, 더 나은 내일, 함께 만드는 LH



한국토지주택공사

수신자 : 종전토지소유자 및 포괄승계인 귀하
(경유)

참 조 :

제 목 : 향남2지구 환매권 통지 및 환매권 행사 여부 회신요청

1.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.

2.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우리공사가 귀하로부터 취득한 종전소유 토지중 일부가 사업지구에서 필요없게 됨에 따라 「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」 제13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)에 의거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

- 다 음 -

가. 환매대상토지

소재지	지번 별첨	면적(m ²)	비고

나. 환매금액의 결정 : 수용당시 보상금액에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 가산
[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]

3. 붙임 양식에 의거 환매권 행사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, 환매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]

- 첨부 1. 환매대상토지 내역 1 부.
2. 환매여부 통지서 1 부.끝.

「제공받은 개인정보는 “개인정보보호법”에 따라 사용목적 달성 후
파기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」

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



결재 부장대우 나채윤

전결 02/03
부장 주성호

시행 경기화성보상토지판매부-670 (2021.02.03.) 접수

우 18371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59-26(병점동)

/ <http://www.lh.or.kr>

전화 031-228-0177 전송 0503-6994-0333 / ncyun@lh.or.kr

/ 비공개(6)

환매여부 통지서

□ 대상토지

소재지	지번	면적(㎡)	비고

본인은 「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」을 위한 토지보상 당시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 발생 안내문을 통지 받고, 아래와 같이 환매 여부를 통지합니다.

- 아 래 -

환매의사 있음	환매의사 없음

2021년 월 일

환매권자 (성 명) (인)
(주민번호)
(주 소)

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 귀중

상속재산 분할 협의서
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매 대상자인
망 _____이(가) _____년 _____월 _____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중에서 위 환매
신청 및 계약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기로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였기에 본 협의
서를 제출합니다.

■ 당초 환매 대상자(사망)

성명 : _____ 주민등록번호 : _____
주소 : _____

■ 변경 환매 대상자(상속) * 인감날인

성명 : _____ (인) 주민등록번호 : _____
주소 : _____
연락처 : _____

■ 상속인 *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

성명 : _____ (인) 주민등록번호 : _____
성명 : _____ (인) 주민등록번호 : _____
성명 : _____ (인) 주민등록번호 : _____
성명 : _____ (인) 주민등록번호 : _____
성명 : _____ (인) 주민등록번호 : _____
성명 : _____ (인) 주민등록번호 : _____

※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'별지' 첨부

* 붙임 : 사망자의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1부와
상속인 전원의 각각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

2021. . .

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 귀하